

- 바. 제2 동서 경제 회랑
- 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메콩 분지 개발 협력(AMBDC)
- 아. 싱가포르-쿠밍 철도 연결(SKRL) 사업. 그리고
- 자. 메콩강 분지 우선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메콩강 위원회와의 경험 공유

제 4 장 그 밖의 분야

제 4.1 조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 동반자 관계 확대

포괄적인 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데에 따라 당사국들이 상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새로운 분야로 경제 동반자 관계를 확대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한다.

제 5 장 최종조항

제 5.1 조 분쟁 해결

1. 이 기본협정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를 통하여 해결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3항(서비스무역)·제2.3조제3항(투자)·제3장(경제협력)·제4장(그 밖의 분야) 및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제 5.2 조 협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이 기본협정에 규정된 협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무역협상위원회가 설치된다.
2. 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무역협상위원회는 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특정분야에 대한 협상을 수행하는 데에 자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3. 이 기본협정에서 예정된 협상의 개시 즉시 시작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러한 협상의 공식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의 협상 입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무역 제한적이거나 왜곡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5.3 조 기본협정의 이행

1. 대한민국-AEM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당사국들의 고위경제관리 또는 그 지명자로 구성되어 설립되는 이행위원회가 대한민국-AEM의 감독 및 지도 하에 제2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히 소집된다.
2. 당사국들은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 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을 조정·감독 및 감시 한다.
 - 나.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 다.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와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리고
- 라.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당사국들이 이행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이행위원회는 자신의 기능을 달성하는데 있어,

- 가. 임시 또는 상설 위원회·작업반 또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기구에 특정 사안에 관한 임무를 부여 할 수 있다. 그리고
- 나.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행위원회는 대한민국-AEM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5. 이행위원회는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며, 대한민국-AEM은 이 규칙과 절차를 승인한다.

6. 이행위원회는 이 기본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소집되며, 그 이후에는 매년 또는 달리 적절히 소집된다.

제 5.4 조 사무국 및 접촉선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위하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이, 대한민국을 위하여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지

원을 공동으로 제공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 목적을 위한 당사국들 간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 및 통보는 영어로 이루어지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 및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당사국들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간에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자 자신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받은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관서 또는 관리를 확인해주며,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5.5 조 부속서 및 미래의 법적 문서

1.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는 이 기본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당사국들은 이 기본협정의 규정에 따라 미래에 법적 문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서는 각각 발효하자마자 이 기본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5.6 조 개 정

이 기본협정의 규정은 당사국들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개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5.7 조 기 탁 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이 기본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즉시 협정의 인증등본을 제공한다.

제 5.8 조 발 효

1. 이 기본협정은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그때까지 통보한 서명국들 중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이 기본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기본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날까지 이 기본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

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노무현
대통령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하자 하>NN 볼키아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왕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삼택훈센
총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수실로 밤방 요도요노
대통령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분낭 보라ҷ
총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압둘 아마드 바다위
총리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소 원
총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리 시엔 룽
총리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탁신 치나왓
총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판 반 카이
총리